

2006. 9. 4 (월) 10:00
제131회 임시회 예결위 제2차

2006년도 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규 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 토 경 과

- 제출일자 : 2006. 8. 21
- 회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6. 9. 1

2.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239,319,217	211,495,795	27,823,422	13.2
일반회계	202,845,680	179,267,447	23,578,233	13.2
특별회계	36,473,537	32,228,348	4,245,189	13.2

-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8억 2,342만 2천 원이(13.2%)증액된 **2,393억 1,92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2,028억 4,5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천원**이(13.2%)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64억 7,3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18만 9천원**이(13.2%) 증액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회계)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202,845,680	100	179,267,447	100	23,578,233	13.2
자 채 수 입	소 계	31,134,520	15.3	26,018,737	14.5	5,115,783	19.7
	지방세	11,564,209	5.7	11,564,209	6.5	0	0
	세외수입	19,570,311	9.6	14,454,528	8.0	5,115,783	35.4
의 존 수 입	소 계	171,711,160	84.7	153,248,710	85.5	18,462,450	12.1
	지방교부세	105,896,658	52.2	95,860,914	53.5	10,035,744	10.5
	조정교부금	3,240,000	1.6	3,400,000	1.9	△ 160,000	△4.7
	보조금(국고)	62,574,502	30.9	53,987,796	30.1	8,586,706	15.9
	국고보조금	45,016,968	22.2	41,784,366	23.3	3,232,602	7.7
	도비보조금	17,557,534	8.7	12,203,430	6.8	5,354,104	43.9

○ 지방세 수입 :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9,570,311	100	14,454,528	100	5,115,783	35.4
경 상 적 수 입	소 계	4,541,765	23.2	4,541,765	31.4	0	0
	재산임대수입	80,953		80,953		0	0
	사용료 수입	457,459		457,459		0	0
	수수료 수입	1,143,783		1,143,783		0	0
	사업장 생산수입	5,870		5,870		0	0
	징수교부금수입	282,500		282,500		0	0
	이자수입	2,571,200		2,571,200		0	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15,028,546	76.8	9,912,763	68.6	5,115,783	51.6
	재산매각수입	40,000		40,000		0	0
	순세계잉여금	13,410,227		9,000,000		4,410,227	49.0
	이월금	705,556		0		705,556	100
	국비 사용잔액	529,865		0		529,865	100
	도비 사용잔액	175,691		0		175,691	100
	부담금	608,556		608,556		0	0
	잡수입	184,207		184,207		0	0
지난년도수입	80,000		80,000		0	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천원(13.2%)이 증액된 2,028억 4,568만원이며,
 - 국·도비 의존수입이 184억 6,035만원(12.1%) 증액됨.
 - 세입예산액 자체수입 비율은 15.3% 이며, 국·도비 의존수입 비율은 84.7%임.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적 수입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수입에서 51억 1,578만 3천원이(35.4%)증액 되었음
 - 특징은, 임시적 수입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90억원) 대비 44억 1,022만 7천원이 증액된 134억 1,022만 7천원으로 49%가 증액됨. 이는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다, 세출예산(일반회계)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예산안	%	예산액	%	증 감액	%
합 계	202,845,680	100	179,267,447	100	23,578,233	13.2
경 상 예 산(100)	54,722,520	27.0	53,326,457	29.7	1,396,063	2.6
인 건 비(110)	30,955,913	15.3	30,649,777	17.1	306,136	1.0
경상적 경비(120)	23,766,607	11.7	22,676,680	12.6	1,089,927	4.8
사 업 예 산(200)	141,958,343	70.0	120,897,860	67.4	21,060,483	17.4
보 조 사 업(210)	93,762,827	46.2	78,194,045	43.6	15,568,772	19.9
자 체 사 업(220)	48,195,516	23.8	42,703,815	23.8	5,491,701	12.9
채 무 상 환(300)	350,000	0.2	350,000	0.2	0	0
지방채상환(310)	350,000	0.2	350,000	0.2	0	0
예 비 비 등(400)	5,814,817	2.9	4,693,130	2.6	1,121,687	23.9
예 비 비(410)	3,200,244	1.6	3,200,244	1.8	0	0
기 타(420)	2,614,573	1.3	1,492,886	0.8	1,121,687	75.1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8억 4,568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천원(13.2%)이 증액되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7억 2,252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단가 인상 등으로 13억 9,606만 3천원(2.6%)이 증액되었으며,
- 사업예산은 1,419억 5,624만 3천원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 등 210억 5,838만 3천원(17.4%)이 증액되었음.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음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168만 7천원(23.9%)이 증액되었음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예비심사 결과는 붙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참조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주요 결과

《총무위원회》

- 세출예산안 변동조서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페이지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유	비 고
	관	항					
계			3건		24,748		
131	일 반 행정비	재무 행정	201-01(일반운영비)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10,000	6,000	예산 과다편성	
140	사 회 개발비	문화 및 체육	307-02(민간경상보조)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	6,968	3,748	예산 과다편성	
142	"	"	307-02(민간경상보조)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50,000	15,000	군비 과다계상	

.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조서

(단위 : 천원)

회계 별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승인액	조 건 부 승인 내역	비 고
	관	항					
계			2건	646,410	646,410		
일반 회계	일 반 행정비	자치 행정	307-02 새마을운동 우수 마을 평가 보상금	80,000	80,000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	
"	교 육 및 문화	문화 및 체육	401-01 궁도장 건립사업	566,410	566,410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설계시 단가 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	

《산업건설위원회》

- 변동사항 없음

○ 주문사항

《총무위원회》

- ★ 궁도장 건립사업 566,410천원은 사업의 과다계상으로 설계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 ★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0천원은 과목을 민간 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

《산업건설위원회》

★ 거창사과 TV홈쇼핑 홍보

-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 제고

★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시 의회 사전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 하는바 향후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 사용.